

2022년 제3회 가평파크골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적격 및 면접심사 일정 공고

2022년 제3회 가평파크골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적격 및 면접심사 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14일

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

1. 서류적격 심사 대상

지원분야	응시번호	성명	도착시간
시설·환경관리	gpfmc-01	박○범	13:00
	gpfmc-02	한○용	13:10

2. 적격심사 진행(자격기준 확인)

가. 심사일시: 2022. 6. 16.(목) / 13:00 ~

나. 장 소: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지하1층 다목적 강당

다. 심사내용

분야	자격기준(각 기준에 모두 해당)
시설·환경관리	1. 만18세 이상 ~ 만68세 이하 2. 공고일 1일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

- 연 령: 채용예정일(2022. 6. 20.) 기준 만18세 이상 만68세 이하

- 거주지: 공고일(2022. 5. 30.) 1일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: 복지카드 및 장애인등록증명서

라. 제출서류

- 현주소 전입일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

※ 최종합격자의 거주지 재확인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 취소

- 가점대상자(우대사항) 증빙서류 1부.(해당자에 한함)

3. 면접심사

가. 일 시: 2022. 6. 16.(목) / 14:00 ~

나. 장 소: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지하1층 다목적 강당

다. 면접순서: 응시번호순 (시설·환경관리)

라. 지참서류: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마. 평가항목: 고객지향 및 공익추구 자세 외 4개 항목

평가항목	평가점수	심사 기준					비고
		매우우수 (9~10)	우수 (7~8)	보통 (5~6)	미흡 (3~4)	매우미흡 (1~2)	
합계	50						
고객지향 및 공익추구 자세	10						
창의성	10						
예의·품행 및 성실성	10						
문제파악 및 해결능력	10						
직무 전문성	10						

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보통(30점)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에 대하여 미흡(4점) 이하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.

※ 동점자 발생 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(합격기준) 제3항에 따름

※ 전형우대자 중 면접시험 합격기준 이상자에 한하여 해당 가점 부여

사. 준수사항: 친·인척 중 유명 인사나 고위직이 있다거나,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, 가족관계, 사회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 행위 금지

아. 합격자 결정기준: 100% 면접

4. 최종합격자 발표

가. 발표예정: 2022. 6. 17.(금)

나. 발표방법: 가평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

5. 유의사항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응시생 안내사항

1) 코로나 확진환자, 자가격리자, 당일 발열체크시 이상증세를 나타낸 응시자는

시험응시 불가 * 37.5°C이상의 발열 및 기침·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

2) 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에서 발열체크 후 이상 증상이 없는 응시자 → 응시 가능

- 호반문화체육센터 입구부터 면접시험 입실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, 호반문화체육센터 및 면접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시험실 입실

- 시험 중에도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

나. 시험당일 신분증, 응시표, 제출서류를 지참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서 제외됩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터팀 031)8078-80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고용의 해고

■ 최종 합격 후 근무태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시행내규 제47조(고용의 해고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의 해고 진행

1.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
2. 출·퇴근 시간 및 근무태도의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지적 당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1월 결근일수 합계가 7일 이상인 때

3.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
4.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공단의 운영에 손해를 끼친 때
5.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여 입사하거나 직위(급)을 사칭한 때
6. 사회통념상 신체·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7. 공금의 횡령·유용 또는 향응을 받거나 배임한 때(금액의 제한은 없음)
8.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
9. 허가 없이 공단 안에서 불온문서의 배부, 시위·집회 등에 참여한 때
10. 공단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때
11.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1년 이내에 직장 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
12.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
13. 근무지변경 등 업무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종 한 때
14.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
15. 형사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
16.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결과 취업의 부적격자로 판정된 때
17. 사업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
18. 공단 취업규정 제11조를 위반 하였을 때
19.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